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443호

「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4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절차 현실화, 확인서 발급 근거마련 등을 위해 일부 내용 개정

2. 주요 내용

- 공공기관의 구매기관 인정기준 현실화(제4조)
- 시범구매제품(3종)의 유효기간 확대(제17조)
-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정보변경 사항 보고내용 추가(제18조)
-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(제18조의3, 별지 제5호 서식)
- 선정취소 사유 명문화 및 취소 효력 발생시기 구체화(제23조)

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'23년 9월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(참조 : 판로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lkaiser72@korea.kr
- 2) 주소 : (우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,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
- 3) 팩스 : 044-204-754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(☎044-204-7544, 754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일부개정고시(안) 전문 1부. 끝.